

대구예술대학교 국가근로장학 운영규정

(제정 2009.04.28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2.08.01. 교무위원회)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따라 우리대학교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근로장학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“대구예술대학교 국가근로장학 제도 (이하 ‘본 제도’ 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근로장학생(이하 “근로장학생”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본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학생을 말한다.
2. “정규학생”이라 함은 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 기타(시간제 등록생, 산업체 위탁생, 전공심화과정 등록생, 평생교육시설 등록생)을 제외한다.

제 2 장 국가근로장학운영위원회

제4조 (구성) 국가근로장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근로장학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총장이 우리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 직원이 된다.

제5조 (기능) 위원회는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기본방침, 지급기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.

제 3 장 국가근로장학금

제6조 (대학지원금 및 대응투자) 대학지원금 및 대응투자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대학지원금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배분된 지원금에 의한다.(개정 2022.08.01.)
- ② 대응투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대학교에서 배정받은 대응투자금액에 의한다.(개정 2022.08.01.)

제 4 장 국가근로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

제7조 (근로장학생 기준) 근로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① 본 제도의 수혜대상은 우리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정규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한다.

1. 기초생활수급자
2. 차상위계층
3. 가족의 연간소득이 '세대당 평균소득'에 미달하는 자
4. 가족의 연간 소득이 '세대당 평균소득'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(다만, 이 경우는 교육부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 할수 없다.)(개정 2022.08.01.)

② 제7조 3항에 대한 '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' 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
③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 성적, 교수추천 등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.

④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의 면제·감액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 될 수 있다.

제8조 (근로장소) 근로장학생의 근로장소는 다음과 같다.

① 본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,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다.(개정 2022.08.01.)

1. 학부 및 전공 관련시설 : 산업체(창업보육센터, 산학협력 기관 등), 공공기관(공기업 포함), 연구소, 실험·실습시설, 도서관 등 교내외시설(개정 2022.08.01.)
2. 비학부 및 전공 시설 : 장애인, 아동복지,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, 저소득층 학생 지원 시설(사업)(개정 2022.08.01.)

② 학부 및 전공관련시설의 경우 근로장학생이 행정업무보조 및 청소 등 학부 및 전공과 관련없는 단순 근로는 할 수 없다.(개정 2022.08.01.)

제9조 (근로장학생 선정) 근로장학생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학생처장은 매학기 장학금 배정내역이 포함된 지급시 안을 작성하여 국가근로장학운 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근로장학생은 학생처에서 선발 관리 하며, 장학생의 근무관리에 따른 제반 직무 사항은 각 부서장이 관리 감독한다.

③ 배정된 자리에서 근로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
3. 기타 따로 정하는 서류

④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관련시설 중 산업체에서 근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08.01.)

제10조 (근로기간 및 시간) 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(개정 2022.08.01.)

제11조 (지원금액 산정) 근로장학금액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근로장학생의 시간급 지원금액은 노동부가 고시하는 매년도 시간급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,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②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, 매월 지원 금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근로장학생의 자원에 의하여 근로를 그만 둘 경우에는 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월 미만 단위로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 관련시설 중 산업체에서 근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집행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08.01.)

제 5 장 근로장학사업의 관리 · 운영

제12조 (대학지원금의 관리) 대학지원금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부된 지원금은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08.01.)
- ② 근로장학 지원금의 집행 실태 및 집행 완료에 대한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규정의 보완) 이 규정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 근로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 세부 지침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